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사·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,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‘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’에서 ‘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